



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보도 일시         | 2023. 3. 30.(목) 12:00<br>(금요일 조간) | 배포 일시 | 2023. 3. 29.(수)        |
| 담당 부서<br><총괄> | 환경부<br>화학제품관리과                    | 책임자   | 과 장 권병철 (044-201-6805) |
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담당자   | 사무관 송성욱 (044-201-6809) |
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주무관 이혜빈 (044-201-6825) |

## 생활화학제품 유통감시 강화로 국민안전 확보

- 2022년 하반기 안전·표시기준 위반한 693개 생활화학제품 퇴출 -

□ 환경부(장관 한화진)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(원장 최홍진)은 지난해 하반기(2022년 7월~12월) 동안 ‘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(약칭 화학제품안전법)’에 따라 2만 1,121개 제품을 조사하고, 관련 법률을 위반한 693개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제조 및 수입 금지 등 유통을 차단했다고 밝혔다.

○ 이들 위반제품은 △시장 유통 전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·승인 등 절차를 위반한 626개 제품, △신고 당시에는 안전기준에 적합했으나 실제 유통된 제품에서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62개 제품, △신고번호 등의 표시기준을 위반한 5개 제품 등이다.

※ 신고·승인 위반 : 7년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

안전기준 위반 : 7년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

표시기준 위반 :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

□ 적발된 626개 제품을 품목별로 보면 방향제(228개), 초(155개)가 가장 많았다.

○ 특히, 이번에 적발된 방향제 중에는 ‘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’으로 불법 판매된 사례(6개 제품)가 있어서 방향제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.

- ‘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’은 시장 유통 전에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안전성과 효능·효과를 사전 승인받아야 하나, 현재까지 적법하게 승인받은 제품은 전혀 없다.
- 따라서, 방향제로 신고된 제품이라도 ‘가습기에 사용 가능한 아로마 오일’, ‘가습기에 사용 가능하다’는 등으로 표시·광고한 제품은 모두 불법이므로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.
-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해 적발된 제품은 모두 62개로 미용접착제(24개), 문신용염료(24개), 인쇄용 잉크·토너(7개), 제거제(4개), 특수 목적코팅제(2개), 광택코팅제(1개) 등이다.
  - 이 중 미용접착제 24개 제품에서는 함유금지물질인 메틸메타크릴레이트(MMA)가 최대 158mg/kg, 문신용염료 13개 제품에서는 함유금지물질인 니켈이 최대 43mg/kg이 검출됐다.
  - 문신용염료(1개), 인쇄용 잉크·토너(7개), 제거제(2개) 등 10개 제품은 납이 최대 9.2mg/kg 검출되어 안전기준(1mg/kg)을 초과했다.
- 환경부는 이들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행정처분과 함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‘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’에 등록하고 (사)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도 판매·유통 금지를 요청하고 시행 중이다.
  - ※ 유통차단 흐름도 : 행정처분 공표(환경부) →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 등록 (대한상공회의소, 실시간) → 온·오프라인 유통차단(유통업체)
  - 아울러, 환경부는 회수명령이나 판매금지 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재판매·유통되지 않도록 ‘재유통 모니터링 전담인력’을 배치하여 지속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다.
- 환경부는 위반사례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·신고 등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유통하는 불법제품을 근절하기 위해 선제적인 시장감시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.

- 온라인 구매증가 등 소비형태 변화에 발맞춰 온라인 상시 감시 제품 수를 지난해 1만개에서 올해 1만 5천개로 늘리는 등 불법제품 유통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.
- 이와 함께, 온라인유통사와 협업하여 신고·승인번호가 없는 생활 화학제품은 온라인 판매창구(플랫폼)에 등록을 원천적으로 할 수 없도록 유통체계를 점검하고 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.
- 반복적으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제품에 대한 감시와 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.
- 문신용염료, 미용접착제 등 안전기준을 지속적으로 위반하는 품목의 제조·수입자를 대상으로 주기적인 원료품질검사 요청과 함께 해당 품목에 대한 안전성조사 비중을 확대하는 등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안전기준 위반 시 엄격하게 조치할 예정이다.
- 권병철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장은 “생활화학제품을 구매할 때는 신고·승인된 적법한 제품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”라면서, “앞으로도 상시 감시와 더불어 관계기관 간 협업 강화 등을 통해 불법 생활화학제품 근절에 최선을 다할 계획”이라고 밝혔다.

붙임 1. 질의응답.

2. 전문용어 설명.

3. 안전기준 초과 주요 물질의 유해성 자료. 끝.

※ 별첨: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위반현황(2022.7.~12.)

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담당 부서<br><총괄> | 환경부<br>화학제품관리과          | 책임자 | 과 장 권병철 (044-201-6805)   |
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담당자 | 사무관 송성욱 (044-201-6809)   |
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주무관 이혜빈 (044-201-6825)   |
|               | 한국환경산업기술원<br>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 | 책임자 | 센터장 전성원 (02-2284-1860)   |
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담당자 | 선임연구원 고기오 (02-2284-1870) |

**1. 위반 제품은 어디서 확인 하는지?**

- 위반 제품의 정보는 초록누리 사이트(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, ecolife.me.go.kr)에서 확인이 가능

**2. 위반제품을 발견한 경우 신고방법은?**

- 국민신문고로 민원접수하거나 초록누리 사이트(ecolife.me.go.kr)에서 '부적합 의심 제품신고'(국민신문고로 연계)를 이용하여 신고
- 신고포상금 제도 참여를 원하는 경우 위반행위 신고서 양식\*에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신고, 추후 심사를 거쳐 포상금 지급

\* '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'의 별지1호 서식을 참조(인터넷 '국가법령정보센터'에서 내려받기 가능)

**3. 소비자가 구매한 위반제품의 교환·환불 방법은?**

- 제조·수입업체의 고객센터나 구매처에서 교환 또는 반품하거나, 즉시 교환·반품이 곤란한 경우에는 밀봉해서 제품을 사용하지 말고 추후 교환·반품
- 소비자들이 회수조치 이후 해당 제품을 구입했거나 판매 중인 제품을 발견했을 경우, 국민신문고(www.epeople.go.kr)로 신고

-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: 환경부장관이 위해성평가를 한 결과  
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지정·고시한 생활화학제품
- (관리범위) 가정, 사무실,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 
사용되는 화학제품
- (지정현황) 세정제, 방향제, 탈취제 등 총 43개 품목

| 분류           | 품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세정제 품        | 1. 세정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. 제거제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세탁제 품        | 1. 세탁세제<br>3. 섬유유연제                          | 2. 표백제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코팅제 품        | 1. 광택 코팅제<br>3. 녹 방지제<br>5. 다림질보조제<br>7. 경화제 | 2. 특수목적 코팅제<br>4. 윤활제<br>6. 마감제 |
| 접착·접합제 품     | 1. 접착제<br>3. 경화촉진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. 접합제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방향·탈취제 품     | 1. 방향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. 탈취제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염색·도색제 품     | 1. 물체 염색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. 물체 도색제                       |
| 자동차 전용 제품    | 1. 자동차용 워셔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. 자동차용 부동액                     |
| 인쇄 및 문서관련 제품 | 1. 인쇄용 잉크·토너<br>3. 수정액 및 수정테이프               | 2. 인주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미용제품         | 1. 미용 접착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. 문신용 염료                       |
| 여가용품 관리제품    | 1. 운동용품 세정광택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살균제품         | 1. 살균제<br>3. 가습기용 항균·소독제                     | 2. 살조제<br>4. 감염병예방용 방역 살균소독제    |
| 구제제품         | 1. 기피제<br>3. 보건용 기피제<br>5. 감염병예방용 살서제        | 2. 보건용 살충제<br>4. 감염병예방용 살충제     |
| 보존·보존처리제품    | 1. 목재용 보존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.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                  |
| 기타           | 1. 초<br>3. 인공 눈 스프레이<br>5.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      | 2. 습기제거제<br>4. 공연용 포그액          |

- 위해성평가 : 제품에 함유 가능한 물질에 대한 독성정보를 기초로  
제품을 실제 사용할 때 유해물질이 인체에 노출되는 경로, 量과 빈도  
등을 고려하여 안전성을 평가하는 방법

- **안전기준** : 원료물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물질별로 독성이나 위해성에 따라 어떤 품목에는 사용 제한, 어떤 품목에는 기준치 이상으로 함유할 수 없도록 규정한 기준
- **표시기준** : 제품 포장에 제품명,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번호, 사용상 주의사항 등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는 정보를 표시하도록 한 기준
- **안전기준확인 마크** : 안전기준을 준수한 안전확인 대상생활화학제품임을 확인한 표시로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제품에 표시한 마크



\* 화학구조식, 돋보기, 체크(✓)를 결합 → 꼼꼼한 확인을 뜻함

- **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(대한상공회의소 운영)**: 환경부, 식약처, 산업부에서 제공한 위해상품정보(제품명, 업체명, 사진, 바코드 등)를 유통업체 본사에 일괄 전송하고, 유통사는 이 정보를 각 매장에 전송하여 판매를 차단하는 시스템

\* 바코드 있는 제품은 즉시 판매 차단 가능. 바코드가 없는 제품은 제품명, 업체명, 사진 등의 제품정보 확인을 통해 위해상품 판매 차단



**○ 메틸메타크릴레이트(Methyl Methacrylate)**

- 무색의 액체로 피부, 눈, 코, 인후, 기관지 점막을 자극함
- 높은 농도로 노출 시 폐부종을 일으킬 수 있으며, 어지러움, 과민증, 집중력 장애, 기억력 감소, 태아 발달 장애 및 피부 알러지가 유발할 수 있음

**○ 니켈(Nickel)**

- 은백색의 강한 광택이 있는 고체로서 가단성과 연성을 지님
- 피부 접촉 시 가려움, 발진 등의 증상을 일으킴
- 반복적으로 오랫동안 흡입할 경우 호흡의 짧아짐, 기침, 쉼근거리는 소리, 가슴압박 등의 천식이 발생할 수 있음
- 고농도에 단시간 노출되면 눈과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으며, 반복적으로 오랫동안 노출되는 경우 신장에 영향을 줄 수 있음

**○ 납(Lead)**

- 푸른 빛을 띠는 은백색 또는 회색의 금속으로 연성을 지님
- 유년기에 증가 된 혈중 납 농도는 과잉 행동, 주의력 결핍, 행동 장애 및 인지장애와 관련이 있음